

## 증권저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개정 2025. 10. 29	개정 2026. 01. 01	시행일 변경
<p>제3조(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p> <p>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부터 직전 3개연도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p> <p>1. 만 65세 이상의 노인 (종략)</p> <p>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5. 12. 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준계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생략)</p>	<p>제3조(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p> <p>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부터 직전 3개연도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p> <p>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종략)</p> <p>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8. 12. 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준계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생략)</p>	조특법 제88조의2 개정
제26조(관할법원)	제26조(관할법원)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u>&lt;신설&gt;</u>	부 칙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